

제1624호
2019. 10. 15.(화)

발행인: 동작구청장
편집인: 홍보전산과장

이창우
김미자

전화: 820-1458
FAX: 820-9996

선 람	기관의 장

동작구보

차 례

◎ 공 고

제2019-1145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2019-1150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3
제2019-1151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33
제2019-1152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8
제2019-1153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73

공 람														

1.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구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고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9 - 114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동 작 구 청 장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그 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 사항 반영

-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한 경우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이 공유재산의 사용 및 대부 신청 시 대부료의 50/100까지 감경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29조제4항)
- 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토요일공휴일에 무상대부 가능 조항 신설(안 제65조의2)

나. 상위법령 등 관계규정 반영 및 현행규정 상 미비점 정비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 규정 신설(안 제1조의2)
- 건물대부료 산출방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따르도록 개정(안 제28조)
- 조문 정비 및 오류 개선 미비점 보완(안 제16조, 안 제20조, 안 제26조, 안 제32조, 안 제45조, 안 제89조의2)

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0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 (참조 : 재무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5층 재무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전화 : 02 - 820 - 9006, FAX : 02 - 820 - 9993, E-mail : hjiwon@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 홈페이지 (<http://www.dongjak.go.kr>)

“행정정보-법률·위원회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동작구”를 “서울특별시 동작구”로, “기함”을 “도모함”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동작구공유재산심의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심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유재산심의회”를 “심의회”로, “호선”을 “선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성별을 고려하여”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16조 중 “관리책임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법 제27조제2항”을 “법 제27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27조제4항”을 “법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제25조제3호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으

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을 “서울특별시 동작구”로 한다.

제26조제5항제3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건물의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을 위한 해당 재산의 가격은 영 제14조제3항 및 영 제31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에 따라 산출한다.

제28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제1항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사목 중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바목 중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바목 중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으로 한다.

제2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감경할 수 있다.

1.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작구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이 경우 대부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3.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제30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동작구금고”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서울특별시동작구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규칙」”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서울특별시동작구금고”를 “구금고”로 한다.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퍼센트”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제35조제1항제4호 중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으로 한다.

제45조 중 “서울특별시건축조례”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로 한다.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 중 “서울시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부심사위원회”로 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물품 무상대부) 영 제75조에 따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작구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사무 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토요일 또는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휴일을 말한다)에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동작구 소관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제89조의2 중 “연 3퍼센트”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u>서울특별시동작구</u>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보존·관리업무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신 설></p> <p>제2조(관리책임) ① <u>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u>(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p> <p>② (생 략)</p> <p>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및 업무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u>서울특별시동작구공유재산심의회</u>(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1. (생 략)</p> <p>2.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u>공유재산심의회</u>에서 호선한다.</p> <p>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u>성별을 고려하여</u>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p> <p>③ ~ ⑤ (생 략)</p> <p>제16조(관리)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p>	<p>제1조(목적) ----- ----- ----- <u>서울특별시 동작구</u> ----- -----<u>도모함</u>----- -----.</p> <p>제1조의2(<u>다른 조례와의 관계</u>)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2조(관리책임) ① <u>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및 업무) ①----- ----- <u>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심의회</u>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u>심의회</u>-----<u>선출</u>-----.</p> <p>②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 -----.</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16조(관리) <u>재산관리관</u>----- -----</p>

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② · ③ (생략)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입찰로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과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생략)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4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3.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구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안의 구유재산

5. 서울특별시동작구(이하 “동작구”라 한다)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구유재산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 2. (생략)

3.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5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구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4. (생략)

-----.

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7조제6항-----
-----.

⑤ ----- 법 제27조 제6항-----
-----.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
-----.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4. 「외국인투자 촉진법」-----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2. (현행과 같음)

3. 「외국인투자 촉진법」-----

4. (현행과 같음)

5.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 중소기업 창업·육성관련 법령에 따라 동작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운영 하는 산업 또는 중소기업 지원시설

6. ~ 8. (생략)

⑥ (생략)

제28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 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1.16>
 - 1. 지상 2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 2. 지상 3층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 3. 지상 1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 다.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6. ~ 8.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28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건물의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을 위한 해당 재산의 가격은 영 제14조제3항 및 영 제31조제2항,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에 따라 산출한다.

① ~ ⑦ 삭제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⑤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로 산정조사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 동작구가 간접한 아파트형 공장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각 공장 면적에 비례한 부지평가액을 해당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⑦ 2층 이상 또는 지하2층 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하는 면적비율에 따라 산출한다

제29조(대부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사업목적으로 구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제29조(대부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1. -----

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 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사. 제25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지내 또는 아파트형 공장내의 구유재산

②「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9항에 따라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구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로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 3. (생략)

③ (생략)

<신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②「외국인투자 촉진법」-----

 -----.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35조제2항 제호에 따라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하로 감할 수 있다.

1.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작구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알지못할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이 경우 대부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3.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용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제30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② (생략)

③ 제1항·제2항에 따른 전세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하여 산출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전세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보증금의 예를 준용한다. 다만, 전세금의 이자수입은 동작구 수입으로 한다.

⑤ (생략)

⑥ 제5항에 따라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되어 전세금을 반환함에 있어 그 귀책사유가 대부 받은 자(이하 “전세자”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부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2. 전세자는 제1호에 따른 정산금액을 전세금 반환일까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세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제32조(대부료의 납기) ①·② (생략)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분할납부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제30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서울특별시 동작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

-----.

④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규칙」-----
-----.

⑤ (현행과 같음)

⑥ -----
-----.

2. -----
----- 구금고 -----
-----.

제32조(대부료의 납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

1. ~ 3. (생략)

④ (생략)

제3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 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동작구가 유치한 공장 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 7. (생략)

8.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사유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 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게 해당 사업목적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5.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5. ~ 7. (현행과 같음)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② -----

1. ~ 3. (현행과 같음)

4. -----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5. (현행과 같음)

③「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6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건축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5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장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서울시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서울시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서울시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신 설>

제89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③「외국인투자 촉진법」-----

-----.

제45조(건축위원회의 심의) -----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

제65조(기증품의 취득)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부심사위원회-----
-----.

② ----- 서울특별시 동작구기부심사위원회-----
-----.

③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부심사위원회-----

-----.

제65조의2(물품 무상대부) 영 제75조에 따라 주민등록상 거주자가 동작구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사무 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토요일 또는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휴일을 말한다)에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동작구 소관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제89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9 - 115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동 작 구 청 장

1. 제안이유

우리구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기능재편을 위해 1국 신설을 포함한 행정기구를 개편하여,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 및 행정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시기구 폐지(정규기구 편입)에 따른 1국 신설 등 기구 개편

- 폐지 : 미래비전전략기획단(한시기구)
- 신설 : 기획조정국

< 현 행 >

행정국 + 기획재정국 + 복지환경국 + 도시관리국 + 건설교통국 + 미래비전전략기획단 + 보건소



< 개 편 >

기획조정국 + 생활환경국 + 일자리경제국 + 복지국 + 도시건설국 + 행정국 + 보건소

나. 과 신설·통합

- 신설 : 미래도시과, 지방소득세과, 아동청소년과
- 통합 : 전략사업과 ← 행정타운조성과 + 도시전략사업과

다. 명칭변경

- 기획예산과 ⇒ 기획조정과, 홍보전산과 ⇒ 홍보과, 생활경제과 ⇒ 경제진흥과,
부과과 ⇒ 재산세과, 어르신청소년과 ⇒ 어르신장애인과

라. 국 소속부서 변경

- 기획조정국 ≡ 기획조정과, 홍보과, 미래도시과, 전략사업과
- 생활환경국 ≡ 청소행정과, 가로행정과, 맑은환경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 일자리경제국 ≡ 일자리정책과, 경제진흥과, 재무과, 징수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 복지국 ≡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 보육여성과, 아동청소년과, 사회복지과
- 도시건설국 ≡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 행정국 ≡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체육문화과, 교육정책과, 민원여권과, 부동산정보과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820-1213, FAX: 820-1188, E-mail: estragon@dongjak.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2019-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목 “(국장·단장 및 과장·담당관의 직급 등)”을 “(국장 및 과장·담당관의 직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장·단장의 직급”을 “국장의 직급”으로 한다.

제3조 중 제목 “(국·단의 설치)”를 “(국의 설치)”로 하고, 본문 중 “행정국, 기획재정국,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및 미래비전 전략기획단”을 “기획조정국, 생활환경국, 일자리경제국, 복지국, 도시건설국 및 행정국”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안전재난담당관: 안전·재난 총괄, 시설안전, 환경순찰, CCTV 통합관제센터, 지역건축안전센터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전재난담당관: 안전·재난 총괄, 시설안전,

환경순찰, 지역건축안전센터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획조정국에 두는 과) ① 기획조정국에 기획조정과, 홍보과, 미래도시과, 전략사업과를 둔다.

② 기획조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배정·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3. 법제심사 및 소송에 관한 사항
4. 구정홍보 및 언론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도시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6. 전산 및 통계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8. CCTV 통합관제센터에 관한 사항
9. 행정타운조성에 관한 사항
10.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11. 구정 역점사업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청내의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생활환경국에 두는 과) ① 생활환경국에 청소행정과, 가로행정과, 맑은환경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를 둔다.

② 생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폐기물 수집 및 운반에 관한 사항
2.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에 관한 사항
3. 환경미화원에 관한 사항
4. 공중화장실의 설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청소대행업자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6.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7. 환경순찰의 확인 및 가로장애물 제거에 관한 사항
8. 토지의 수용·사용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9. 도로·지하도·하천·구거 그 밖에 공공용지의 사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점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11. 옥외광고물 관리 및 도시경관개선에 관한 사항
12. 대기오염·수질오염 및 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13. 소음·진동·악취 및 그 밖에 환경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14.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5.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6. 자동차 공해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7. 연료판매소 허가(등록, 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8.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에 관한 사항
19. 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0. 가스·난방 시공업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1. 공원·녹지관리의 총괄
22.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23. 도시공원조성 및 시설유지관리
24. 공원녹지대 조성 및 시설유지관리
25. 체육공원 관련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26. 지역교통종합 대책의 수립 및 시행
27. 버스·택시·화물 인·면허, 정비업소관리, 시설관리
28. 자동차등록세에 관한 사항
29. 중기 등록 검사에 관한 사항
30. 불법 주·정차 단속, 주·정차 금지구역 조정
31. 교통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수입관리
32. 버스전용차선, 법규위반차량 단속, 정류장 질서에 관한 사항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일자리경제국에 두는 과) ① 일자리경제국에 일자리정책과, 경제진흥과, 재무과, 징수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를 둔다.

② 일자리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사항
2. 창업 및 일자리 시설, 동작50플러스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5.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농업 및 수산업,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
7.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공사의 도급·물품의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9. 물품수금관리 및 재물조사에 관한 사항
10. 지출·세출의 총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1. 회계검사·직원 봉급 및 수당에 관한 사항
12. 구세입의 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포함)
13. 지방세 가산금의 조정 및 독촉결의
14. 현년도 및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에 관한 사항
15. 세외수입의 총괄
16. 재산세, 등록면허세에 관한 사항
17. 부동산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사항
18. 자동차세, 차량취득세에 관한 사항
19. 주민세, 법인에 관한 시·구세에 관한 사항
20.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레저세에 관한 사항
21.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관한 사항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복지국에 두는 과)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 보육여성과, 아동청소년과, 사회복지과를 둔다.

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생활지원계획 수립·조정업무
2. 공공기관 서비스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3. 소관법인의 시설 인·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상담실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구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
6.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8. 영유아보육, 여성복지, 한부모복지, 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
9. 출산장려,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근로청소년복지·요보호아동예방 및 불우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11.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
12.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도시건설국에 두는 과) ① 도시건설국에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도로관리과, 치수과를 둔다.

② 도시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행정의 종합 및 주택통계에 관한 사항
2. 시영주택의 관리·주택개량·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3. 주택건설업자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무허가 건물의 발생방지·위험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5. 도시관리계획·도시개발·도심재개발에 관한 사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인·허가
7.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8. 범죄예방디자인에 관한 사항
9. 건축행정의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에 관한 사항
10. 건축허가·착공 및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11. 위법건물에 관한 사항의 총괄
12. 건축업자 지도감독
13. 영선업무에 관한 사항
14. 도로 및 토목공사의 계획 수립 및 시행
15. 도로 및 보도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6.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의 관리
17. 지하도·지하공장·터널 및 그 부속물의 유지관리
18. 하수행정의 종합 조정
19. 하수도·하천 및 우수지의 건설·유지관리
20. 수방대책에 관한 사항
21. 배수펌프장 및 배수시설의 관리
22.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3. 지하수신고·관리 및 지하수에 관련된 제반사항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행정국에 두는 과) ① 행정국에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체육문화과, 교육정책과, 민원여권과, 부동산정보과를 둔다.

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조직·보안에 관한 사항
2. 선거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3. 지방의회·의전·동행정에 관한 사항
4.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7. 국민운동의 계획수립 추진 및 평가
8. 새마을지도자 육성관리 및 새마을금고 운영지도
9. 바르게살기 운동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민방위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1. 전시운영계획·민방위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2. 민방위대 설치·조직편성·동원에 관한 사항
13.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14. 생활체육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15. 체육시설업의 신고·허가·등록 및 지도감독
16. 공공체육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및 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17. 문화·예술·관광에 관한 사항
18. 음반·비디오물·노래연습장·게임물 등에 관한 사항
19. 여가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20.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21. 도서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2.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23. 문서·관인·민원상담 및 민원안내에 관한 사항
24. 각종 민원서류의 접수처리 및 자료의 보관과 열람에 관한 사항
25. 제증명의 발급·진정의 접수처리·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사항
26. 구·동 민원업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7. 여권 심사 및 발급에 관한 사항
28. 지적업무의 기획 및 조정 총괄, 부동산 중개업 허가 및 지도감독
29. 토지거래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30. 지적전산·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토지이동정리에 관한 사항
31. 지가조사 및 평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사항
32. 지적민원 및 건축물대장관리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라목 중 “기획재정국”을 “기획조정국”으로, 같은 호 마목 중 “일자리경제국”을 신설하며, 같은 호 바목(종전에 마목)을 “보건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가목 중 “복지환경국”을 “복지국”으로, 같은 호 나목 중 “도시관리국”을 “생활환경국”으로, 다목 중 “건설교통국”을 “도시건설국”으로 하며, 마호를 삭제한다.

②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행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을 “기획조정국장, 생활환경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 중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을 “기획조정국장, 생활환경국장, 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제24조제2항제4호 중 “국장·소장·단장 및 과장”을 “국장·소장 및 과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동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동작구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중 인력·재정동원지원반 “부과과”를 “재산세과”로, 보급·급식지원반 “생활경제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생활경제과”를 “경제진흥과”로, 통신·전산지원반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기획예산과”를 “기획조정과”로, 홍보지원반 “홍보전산과장”을 “홍보과장”으로, “홍보전산과”를 “홍보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홍보전산과장”을 “홍보과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동작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기획조정국장”으로, 제6조 중 “홍보전산과장”을 “홍보과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기획조정국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문화팀장”을 “문화관광팀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조정국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 중 “홍보전산과장”을 각각 “미래도시과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조정국장”으로 하고, 제25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조정국장”으로 한다.

⑯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

획재정국장”을 “기획조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국장, 복지환경국장”을 “기획조정국장, 복지국장”으로, 같은 조 제6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⑱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조정국장”으로,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을 “생활환경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⑲ 「서울특별시동작구 재정계획·공시심의회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조정국장”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을 “생활환경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으로 하며, 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로 한다.

⑳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로 한다.

㉑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제2호 중 “기획재정국장”을 각각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㉒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기획조정국장, 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㉓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조정국장”으로 한다.

㉔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기획재정국장, 복지환경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 복지국장”으로 한다.

㉕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고, 제15조제1항 중 “생활경제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한다.

㉖ 「서울특별시동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국장, 복지환경국장”을 각각 “일자리경제국장, 복지국장”으로 하고, 제9조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하며, 제10

조제2항 중 “생활경제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한다.

㉓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생활경제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한다.

㉔ 「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㉕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같은 조 제5항 중 “지활고용팀장”을 “지활주거팀장”으로 한다.

㉖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㉗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관리국장”을 “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 생활환경국장”으로 하고, 제11조제2항 및 제21조제4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각각 “어르신장애인과장”으로 한다.

㉘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을 “기획조정과장, 어르신장애인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어르신청소년과장”을 “어르신장애인과장”으로 한다.

㉙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㉚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어르신청소년과장”을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한다.

㉛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 어르신청소년과장”을 “복지국장,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㊀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하고, 제17조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㊁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생활환경국장”으로,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㊂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생활환경국장”으로,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㊃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생활환경국장”으로,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㊄ 「서울특별시 동작구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중 “복지환경국장”을 “생활환경국장”으로 한다.

㊅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생활환경국장”으로 한다.

㊆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도시건설국장, 생활환경국장”으로 한다.

㊇ 「서울특별시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㊈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④⑦ 「서울특별시동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도시건설국장, 생활환경국장”으로 한다.

④⑧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생활환경국장”으로 한다.

④⑨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6조제4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각각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⑤⑩ 「서울특별시동작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5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장·단장 및 과장·담당관의 직급 등)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국장·단장의 직급 및 구본청·직속기관의 과장·담당관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2조(국장 및 과장·담당관의 직급 등) ①-----본청 국장----- ----- -----. ② (현행과 같음)
제3조(국단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국, 기획재정국,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및 미래비전 전략기획단을 둔다.	제3조(국의 설치) ----- ---- 기획조정국, 생활환경국, 일자리경제국, 복지국, 도시건설국 및 행정국-----
제5조(행정국에 두는 과) ① 행정국에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홍보전산과, 체육문화과, 민원여권과	제5조(기획조정국에 두는 과) ① 기획조정국에 기획조정과, 홍보과, 미래도시과, 전략사업과를

를 둔다. <개정 2012.6.14., 2014.12.24., 2015.12.28., 2018.12.6.>

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4, 2013.5.31, 2014.12.24, 2015.12.28>

1. 인사·조직·보안에 관한 사항
2. 선거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3. 지방의회·의전·동행정에 관한 사항
4.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전산 및 통계에 관한 사항
6.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국민운동의 계획수립 추진 및 평가
8. 새마을지도자 육성관리 및 새마을금고 운영지도
9. 바르게살기 운동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생활체육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11. 체육시설업의 신고·허가·등록 및 지도감독
12. 문화·예술·관광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2.6.>
13. 음반·비디오물·노래연습장·게임물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2.6.>
14. 여가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2.6.>
15. 문서·관인·민원상담 및 민원안내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6.>
16. 각종 민원서류의 접수처리 및 자료의 보관과 열람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6.>
17. 제증명의 발급·진정의 접수처리·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6.>
18. 구·동 민원업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6.>
19. 민방위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6.>
20. 전시운영계획·민방위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6.>
21. 민방위대 설치·조직·편성·동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6.>
22.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6.>

둔다.

② 기획조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의 기획·조정·평가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배정·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3. 법제심사 및 소송에 관한 사항
4. 구정홍보 및 언론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도시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6. 전산 및 통계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8. CCTV 통합관제센터에 관한 사항
9. 행정타운조성에 관한 사항
10.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11. 구정 역점사업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청내의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 23. 여권 심사 및 발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6.>
- 24. 그 밖에 청내의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개정 2018.12.6.>
- 25.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6.>
- 26.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6.>
- 27. 공공체육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및 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6.>

제6조(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재무과, 일자리정책과, 교육정책과, 생활경제과, 징수과, 부과를 둔다. <개정 2014.12.24., 2018.12.6.>

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2.24>

- 1. 구정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 2. 예산의 편성·배정·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 3. 법제심사 및 소송에 관한 사항
- 4.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5. 공사의 도급·물품의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 6. 물품수급관리 및 재물조사에 관한 사항
- 7. 지출·세출의 총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8. 회계검사·공채·직원저축에 관한 사항
- 9.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6.>
- 10. 창업 및 일자리 시설, 동작50플러스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6.>
- 11.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 12. 도서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6.>
- 13.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6.>
- 14. 사회적경제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6.>
- 15. 중소기업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6.>

제6조(생활환경국에 두는 과) ① 생활환경국에 청소행정과, 가로행정과, 맑은환경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를 둔다.

② 생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일벌떼기물 수집 및 운반에 관한 사항
- 2.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에 관한 사항
- 3. 환경미화원에 관한 사항
- 4. 공중화장실의 설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5. 청소대행업자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 6.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 7. 환경순찰의 확인 및 가로장애물 제거에 관한 사항
- 8. 토지의 수용·사용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 9. 도로·지하도·하천·구거 그 밖에 공공용지의 사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0. 점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 11. 옥외광고물 관리 및 도시경관개선에 관한 사항
- 12. 대기오염·수질오염 및 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 13. 소음진동·약취 및 그 밖에 환경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 14.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15.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16. 자동차 공해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17. 연료판매소 허가(등록, 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18.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에 관한 사항

- 16.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6.>
- 17. 농업및수산업 물환경에관한사항 <개정 2018.12.6.>
- 18. 구세입의 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포함) <개정 2018.12.6.>
- 19. 지방세 가산금의 조정 및 독촉결의 <개정 2018.12.6.>
- 20. 현년도 및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6.>
- 21. 세외수입의 총괄 <개정 2018.12.6.>
- 22. 재산세, 등록면허세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6.>
- 23. 부동산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6.>
- 24. 자동차세, 차량취득세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6.>
- 25. 주민세, 법인에 관한 시·구세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6.>
- 26.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레저세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6.>
- 27.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6.>

제7조(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① 복지환경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어르신청소년과, 보육여성과, 청소년행정과 및 맑은환경과를 둔다. <개정 2014.12.24, 2015.12.28>

② 복지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28>

- 1. 주민생활자원계획수립·조정업무
- 2. 공공기관 서비스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 3. 삭제 <2013.5.31>
- 4. 소관법인의 시설 인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5. 상담실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6. 구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

- 19. 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20. 가스난방 시공업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21. 공원·녹지관리의 총괄
- 22.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 23. 도시공원조성 및 시설유지관리
- 24. 공원녹지대 조성 및 시설유지관리
- 25. 체육공원 관련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 26. 지역교통종합 대책의 수립 및 시행
- 27. 버스·택시·화물 인·면허, 정비업소관리, 시설관리
- 28. 자동차등록세에 관한 사항
- 29. 중기 등록 검사에 관한 사항
- 30. 불법 주·정차 단속, 주·정차 금지구역 조정
- 31. 교통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수입관리
- 32. 버스전용차선, 법규위반차량 단속, 정류장 질서에 관한 사항

제7조(알자리경제국에 두는 과) ① 알자리경제국에 알자리정책과, 경제진흥과, 재무과, 징수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를 둔다.

② 알자리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알자리 창출·자원에 관한 사항
- 2. 창업및알리시설 동·작업플랫폼운영관리에관한사항
- 3. 사회적경제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 4. 중소기업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 5.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 6. 농업및수산업 물환경에관한사항
- 7.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8. 공사의 도급·물품의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 7.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
- 8.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 9.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 10.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 11. 가정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
- 12. <삭제 2015.12.28>
- 13. 보호여성 선도 및 모자복지에 관한 사항
- 14. 근로청소년복지·요보호아동예방 및 불우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 15. 일반폐기물 수집 및 운반에 관한 사항
- 16.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에 관한 사항
- 17. 환경미화원에 관한 사항
- 18. 공중화장실의 설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19. 청소대행업자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 20.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 21. 대기오염·수질오염 및 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 22. 소음·진동·악취 및 그 밖에 환경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 23.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24.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25. 자동차 공해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26. 연료판매소 허가(등록, 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27.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에 관한 사항
- 28. 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29. 가스·난방 시공업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8조(도시관리국에 두는 과) ① 도시관리국에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를 둔다. <개정 2014.12.24., 2016.12.8., 2018.12.6.>

② 도시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2.24>

- 1. 주택행정의 종합 및 주택통계에 관한 사항
- 2. 시영주택의 관리·주택개량·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 3. 주택건설업자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9. 물품수급관리 및 재물조사에 관한 사항
- 10. 지출·세출의 총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11. 회계감사직원 봉급 및 수당에 관한 사항
- 12. 구세입의 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포함)
- 13. 지방제 기산금의 조정 및 독촉결의
- 14. 현년도 및 과년도 채납지방제 징수에 관한 사항
- 15. 세외수입의 총괄
- 16. 재산세, 등록면허세에 관한 사항
- 17. 부동산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사항
- 18. 자동차세, 차량취득세에 관한 사항
- 19. 주민세, 법인에 관한 사구세에 관한 사항
- 20.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레저세에 관한 사항
- 21.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관한 사항

제8조(복지국에 두는 과)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 보육여성과, 아동청소년과, 사회복지과를 둔다.

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주민생활지원계획 수립·조정업무
- 2. 공공기관 서비스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 3. 소관법인의 시설 인·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4. 상담실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4. 무허가 건물의 발생방지우험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 5. 도시관리계획·도시개발·도심재개발에 관한 사항
-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각종 인허가
- 7. 옥외광고물 관리 및 도시경관개선에 관한 사항
- 8. 건축행정의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9. 건축허가·착공 및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 10. 위법건물에 관한 사항의 총괄
- 11. 건축업자 지도감독
- 12. 영선업무에 관한 사항
- 13. 공원·녹지관리의 총괄
- 14.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 15. 도시공원조성 및 시설유지관리
- 16. 공원녹지대 조성 및 시설유지관리
- 17. 체육공원 관련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 18.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
- 19. 지적업무의 기획 및 조정 총괄, 부동산 중개업 허가 및 지도감독 <신설 2018.12.6.>
- 20. 토지거래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2.6.>
- 21. 지적전산·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토지이동정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2.6.>
- 22. 지가조사 및 평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2.6.>
- 23. 지적민원 및 건축물대장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2.6.>

제9조(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① 건설교통국에 가로행정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도로관리과 및 치수과를 둔다. <개정 2013.9.12., 2018.12.6.>

② 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6.>

- 1. 토지의 수용·사용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 2. 삭제 <2018.12.6.>

- 5. 구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
- 6.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 7.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 8. 영유보육, 여성복지, 학부모복지, 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
- 9. 출산장려,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 10. 근로청소년복지·요보호아동예방 및 불우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 11.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
- 12.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제9조(도시건설국에 두는 과) ① 도시건설국에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도로관리과, 치수과를 둔다.

② 도시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주택행정의 종합 및 주택통계에 관한 사항
- 2. 시영주택의 관리·주택개량·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 3. 주택건설업자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3. 삭제 <2018.12.6.>
 - 4. 삭제 <2018.12.6.>
 - 5. 지역교통종합 대책의 수립 및 시행
 - 6. 버스·택시·화물 인·면허, 정비업소관리, 시설관리
 - 7. 자동차등록세에 관한 사항
 - 8. 중기 등록 검사에 관한 사항
 - 9. 불법 주·정차 단속, 주·정차 금지구역 조정
 - 10. 교통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수입관리
 - 11. 버스전용차선, 법규위반차량 단속, 정류장 질서에 관한 사항
 - 12. 도로 및 토목공사의 계획 수립 및 시행
 - 13. 도로 및 보도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14.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의 관리
 - 15. 지하도·지하공장·터널 및 그 부속물의 유지관리
 - 16. 하수행정의 종합 조정
 - 17. 하수도·하천 및 우수지의 건설·유지관리
 - 18. 수방대책에 관한 사항
 - 19. 배수펌프장 및 배수시설의 관리
 - 20.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21. 지하수신고·관리 및 지하수에 관련된 제반사항
 - 22. 환경순찰의 확인 및 가로장애물 제거에 관한 사항
 - 23. 도로·지하도·하천·구거 그 밖에 공공용지의 사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24. 점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 25. 삭제 <2018.12.6.>
- [제목개정 2018.12.6.]

제10조(미래비전 전략기획단에 두는 과) ① 미래비전 전략기획단에 행정타운조성과, 도시전략사업과를 둔다.
 ② 미래비전 전략기획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타운조성에 관한 사항
 2.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 4. 무허가 건물의 발생방지우함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 5. 도시관리계획·도시개발·도심재개발에 관한 사항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인·허가
- 7.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
- 8. 범죄예방디자인에 관한 사항
- 9. 건축행정의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10. 건축허가·착공 및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 11. 위법건물에 관한 사항의 총괄
- 12. 건축업자 지도감독
- 13. 영선업무에 관한 사항
- 14. 도로 및 토목공사의 계획 수립 및 시행
- 15. 도로 및 보도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16.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의 관리
- 17. 지하도·지하공장·터널 및 그 부속물의 유지관리
- 18. 하수행정의 종합 조정
- 19. 하수도·하천 및 우수지의 건설·유지관리
- 20. 수방대책에 관한 사항
- 21. 배수펌프장 및 배수시설의 관리
- 22.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23. 지하수신고·관리 및 지하수에 관련된 제반사항

제10조(행정국에 두는 과) ① 행정국에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체육문화과, 교육정책과, 민원여권과, 부동산정보과를 둔다.
 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조직·보안에 관한 사항
 2. 선거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 3. 안전도시기획에 관한 사항
- 4. 구정 역점사업에 관한 사항

- 3. 지방의회·의전·동행정에 관한 사항
- 4.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5.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
- 6.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 7. 국민운동의 계획수립 추진 및 평가
- 8. 새마을지도자 육성관리 및 새마을금고 운영지도
- 9. 바르게살기 운동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10. 민방위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11. 전시운영계획·민방위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12. 민방위대 설치·조직편성·동원에 관한 사항
- 13.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 14. 생활체육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 15. 체육시설업의 신고·허가·등록 및 지도감독
- 16. 공공체육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및 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 17. 문화·예술·관광에 관한 사항
- 18. 음반·비디오물·노래연습장·게임물 등에 관한 사항
- 19. 여가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 20.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 21. 도서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22.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 23. 문서·관인·민원상담 및 민원안내에 관한 사항
- 24. 각종 민원서류의 접수처리 및 자료의 보관과 열람에 관한 사항
- 25. 제증명의 발급·잔장의 접수처리·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사항
- 26. 구·동 민원업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27. 여권 심사 및 발급에 관한 사항
- 28. 지적업무의 기획 및 조정 총괄, 부동산 중개업 허가 및 지도감독
- 29. 토지거래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 30. 자택산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토지등장부에 관한 사항
- 31. 지가조사 및 평가, 개별이익 환수에 관한 사항
- 32. 지적민원 및 건축물대장관리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9 - 115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동 작 구 청 장

1. 제안이유

우리구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기능재편을 위해 1국 신설을 포함한 행정기구를 조정하여,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 및 행정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시기구 폐지(정규기구 편입)에 따른 1국 신설 등 기구 개편

- 폐지 : 미래비전전략기획단(한시기구)
- 신설 : 기획조정국

< 현 행 >

행정국 + 기획재정국 + 복지환경국 + 도시관리국 + 건설교통국 + 미래비전전략기획단 + 보건소

< 개 편 >

기획조정국 + 생활환경국 + 일자리경제국 + 복지국 + 도시건설국 + 행정국 + 보건소

나. 과 신설·통합

- 신설 : 미래도시과, 지방소득세과, 아동청소년과
- 통합 : 전략사업과 ⇐ 행정타운조성과 + 도시전략사업과

다. 명칭변경

- 기획예산과 ⇒ 기획조정과, 홍보전산과 ⇒ 홍보과, 생활경제과 ⇒ 경제진흥과,
부과과 ⇒ 재산세과, 어르신청소년과 ⇒ 어르신장애인과

라. 국 소속부서 변경

- 기획조정국 ⇐ 기획조정과, 홍보과, 미래도시과, 전략사업과
- 생활환경국 ⇐ 청소행정과, 가로행정과, 맑은환경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주민복지과

- 일자리경제국 ≡ 일자리정책과, 경제진흥과, 재무과, 징수과, 재산처과, 지방소득세과
- 복지국 ≡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 보육여성과, 아동청소년과, 사회복지과
- 도시건설국 ≡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 행정국 ≡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체육문화과, 교육정책과, 민원여권과, 부동산정보과

마. 기타 팀 통합이관 등에 따른 업무 조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820-1213, FAX: 820-1188, E-mail: estragon@dongjak.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청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청의 담당관 및 과장은 부구청장 및 국장을, 보건소의 과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장 구본청

제1절 보좌기관

제3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구청장을 보좌한다.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구·동 감사실시
2. 공직자 비위조사 및 비위공무원의 징계제청
3. 감사·조사결과 집행전말의 관리
4. 각종 정보수집, 분석 및 공무원 비위와 관련된 진정·정보사항 처리
5.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으로 부서의 비위통보사항 처리
6. 구청장이 지시하는 특명사항의 처리
7. 삭제
8. 공직자의 재산등록 접수·관리
9. 청원·진정 등 민원사항 관리 및 처리
10. 전화·서면·통신 등 각종 신고민원 접수처리
11. 민원심의위원회 및 관용심사위원회 운영 등
12. 계약원가의 심사에 관한 사항
13. 직소민원의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14. 삭제
15.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16.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업무 총괄
17. 납세자보호관 운영

제3조의2(안전재난담당관) ① 안전재난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② 안전재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구청장을 보좌한다.

1. 안전정책 총괄·조정 및 재난상황 통합관리
2. 재난관리 기획, 동원계획 및 운영 총괄
3.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4. 재해대책 상황실 유지 관리
5. 재난관리기금 관리 운영
6. 재난발생 위험시설 지정 및 계절별 취약시설 안전관리 지도
7. 교량, 터널, 지하도 등 도로 시설물 안전관리 지도
8. 다중이용 건축물, 공동주택, 공공건축물 안전관리지도
9.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10.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관리
11. 안전관리자문단 관리

12. 「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관한 사항
13.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에 관한 사항 총괄
14. 환경순찰 적출사항 및 견문보고사항 처리
15. 응답소 현장민원 총괄 관리
16.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7. 건축법령에서 규정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확인·검토·심사 및 점검
- 가.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다중이용시설인 경우 건축허가 시 구조·파난 및 방화설비기준에 관한 협의
18. 건축인·허가/착공(공사 포함) 안전대책 수립 및 안전관리 지원/점검
- 가. 지하1층 이상 굴토공사 또는 인접대지에 2m 이상 옹벽·석축이 있는 경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인접한 경우 등
- 나. 기타 전문적인 기술지원이 필요한 공사
19. 안전등급 D급 이상 노후건축물 및 급경사지 등 점검 및 관리
20.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21.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22. 건축물 화재 및 지진 관련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 가. 공공/민간 건축물 지진대책 매뉴얼 제작 및 홍보, 내진성능 실태조사·관리
- 나. 드라이비트 외벽시공 등 취약건축물 조사·관리(DB화)
- 다. 기타 건축물 화재 및 지진관련 필요한 사업, 기술지원
23.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제2절 기획조정국

제4조(기획조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기획조정과장, 홍보과장, 미래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전략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

제5조(기획조정과) 기획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규정 기본운영계획 및 주요업무계획 수립·총괄
2. 대통령, 국무총리, 시장, 구청장 지시사항 총괄
3. 회의자료 작성 및 위원회 총괄 관리
4. 사무관리 개선 및 제안제도에 관한 사항
5. 사무이양 및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항
6. 정보자료실 관리 운영
7. 구 예산 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총괄
8. 기채관리 및 재정금융 동원계획의 수립
9. 예산제도의 연구 개선

10.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 및 예산 조정
11. 시설관리공단 사업승인·보고 및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12. 시설관리공단 각종 규정 제·개정(안) 검토
13. 시설관리공단 조직 및 경영실적 관리
14. 혁신업무 총괄·조정
15. 지방분권, 균형발전 업무 총괄·조정
16.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
17. 구 시책사업 등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
18. 자치법규의 제·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19. 자치법규, 훈령·고시·공고 및 예규의 심사
20. 법규의 편찬 및 발간
21.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22. 그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홍보과) 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
2. 각종 매체 활용 홍보
3. 각종 홍보간행물 발간·배포
4. 소식지편집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명예기자단 운영에 관한 사항
6. 유료광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7. 구 이미지(브랜드, 상징물 등) 개발 및 관리
8. 공고·고시·구보발간
9. 언론매체 홍보
10. 신문 및 간행물 구독관리
11.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12. 사진 촬영 및 기록유지
13. 인터넷, 전자매체, 모바일 등 미디어를 활용한 구정홍보
14.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 및 운영
15. 영상을 활용한 구정홍보
16. 영상 촬영 및 자료 관리

제7조(미래도시과) 미래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조성 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3. 중앙부처 및 서울시 등 스마트도시 관련 각종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사물인터넷 기반 행정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빅데이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9. CCTV 통합관제센터 및 CCTV 통합운영
10. 통합보안 관제 및 영상정보 관련 업무
11. 구정 전산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조정
12. 소속기관의 전산화 추진
13. 구 홈페이지 운영·관리
14. 자가 광통신망 운영
15. 정보통신실, 사이버침해센터 운영
16. 정보화교육 운영 및 전산교육장 관리
17. 정보통신설비의 사용전 검사에 관한 사항
18. 인터넷방송 및 미디어 운영
19. 정보화 시책사업 발굴 추진에 관한 사항
20. 각종 정보화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21. 정보통신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22. 주전산기 통합유지보수·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23. 구내 정보통신망 및 장비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4. 각종 조사통계에 관한 사항

제8조(전략사업과) 전략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타운 건립 총괄기획·조정, 투자심사관리
2. 현청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3. 현청사의 매각에 관한 사항
4. 신청사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신청사 건물 신축(설계·시공·감독 등)에 관한 사항
6. 행정타운 조성 관련 용역 등 건축분야 업무 전반
7. 행정타운건립 부지의 토지수용·사용 및 보상에 관한 사항
8. 행정타운조성 참여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9. 임시청사 확보 및 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
10.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11. 주민공모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도시재생 지속성 확보 방안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13. 도시재생대학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주거환경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15.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16. 양녕주차장 청년임대주택 복합건물 건립사업에 관한 사항
17. 흑석동 유수지 복합개발에 관한 사항
18. 용양봉저정 일대 관광명소화 사업에 관한 사항
19. 사당권 공공복지 복합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20. 대방동 군부지 효율적 활용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절 생활환경국

제9조(생활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청소행정과장, 가로행정과장, 맑은환경과장,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10조(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쓰레기 종량제 종합계획 수립·시행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관리
3. 예산, 회계 및 세외수입 현계 총괄
4. 자원회수시설 참여계획 수립·시행
5. 폐기물 종합계획 수립·시행
6.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업무
7. 환경미화원 인사·복무 및 임금·후생복지 관리
8. 폐기물처리업 허가·계약업무 운영 관리
9. 적화장 및 미화원 휴게실 운영 관리
10.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11. 지역·가로 청소작업 및 안전관리
12.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계획·수립 시행
13.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계획 수립·시행
14. 재활용센터, 교환소운영 및 재활용품 수거체계 관리
15. 재활용품 선별장 작업 및 유지관리
16. 재활용품 수거실적 및 판매대금 기금관리
17. 청소차량 및 차고지 유지관리

18. 적화장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
19. 차량운전원·정비원 관리, 차량부품 및 유류 수불관리
20.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지도감독
21. 분뇨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체 지도감독 및 오수처리시설 설치·유지 관리
22. 오수처리시설은 과태료 부과·징수
23.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24.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가로행정과) 가로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 하천, 구거 및 그 밖에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와 관리
2. 공공용지(도로, 하천, 구거, 제방)의 점용료 부과징수
3. 지하도, 지하상가의 도로점용 허가 및 이와 관련된 사항
4. 전문건설업 면허 갱신 발급
5. 토지의 수용·사용 및 보상에 관한 사항
6. 가로환경개선사업의 종합 추진
7. 환경순찰 확인 및 가로장애물 제거
8. 도로 임시점용 허가

제12조(맑은환경과) 맑은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
2. 배출시설 설치허가
3.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4. 배출부담금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5. 무허가 공해업소 단속
6. 자동차 공해단속 및 행정처분
7. 생활공해(소음, 분진, 진동, 악취) 단속
8. 환경보전계획 및 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9. 구민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10.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업소 관리
11. 청정연료 사용에 관한 업무
12. 수질오염 방지업무
13. 환경관련단체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저수조 위생관리 및 지도감독

15.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사항
16. 연료판매소 허가(등록,신고) 및 지도감독
17. 연료의 품질관리 및 연료사용 위해방지
18. 녹색상품 구매촉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9. 열사용 기자재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20. 전문건설업(특정열기자재시공업, 가스시공업) 등록 및 지도감독
21. 전기공사 및 자가용 전기설비 지도감독
22. 전기용품 단속
23. 가스안전관리 및 가스수급 지도감독
24. 가스사용시설 신고에 따른 지도감독
25. 도시가스에 관한 사항
26. 승용차요일제 정착화에 관한 사항
27. 이륜차정기검사 업무
28. 석면관리 업무 및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
29. 환경전문공사업 및 측정대행업 관리
30.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한 사항
31. 에너지 절약 및 지원, 에너지 효율화 개선에 관한 사항
32. 승용차요일제 업무
33.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업무 (적용대상 조명별 설치 및 신고를 담당하는 해당부서에서 민원처리)

제13조(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원조성계획 및 조성사업
2. 시설공원 관리 및 공원 내 각종 동상기념물 등 유지관리
3. 공원녹지 점·사용 허가
4. 공원시설 관리위탁 허가
5. 녹지대 조성 및 가로수식재 유지관리
6. 어린이 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7. 수벽수림대 시설녹지 조성 및 유지관리
8. 공동주택 인,허가에 따른 조경계획 협의
9. 꽃묘 식재 및 관리
10. 공원녹지공유재산 관리 및 사용료 부과
11. 산불방지 및 산림병충해 방지대책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12. 임야 훼손 및 산림범법자 단속

13. 공원 및 임야내 불법 건축물 관리 및 과태료 이행 강제금 부과징수
14. 사방조림사업 및 육림지도
15. 임야절개지 및 임야내 위험시설물 관리
16. 약수터 관리
17. 벌채허가 및 부정임산물 단속
18. 임산물 수급 및 제재소의 지도감독
19. 지정보호수 유지관리
20. 조수보호 및 수렵의 지도
21. 대체조림비 및 전용 부담금 부과 징수
22. 체육공원 관련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23. 공원내 체육시설, 매점 등의 관리총괄 및 위탁사무에대한 지도.감독

제14조(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종합대책 총괄(특별수송 및 수송동원)
2.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및 기업체 교통 수요 관리
3. 사업용 자동차등록 및 차고지 신고에 관한 사항
4. 마을버스 등록에 관한 사항
5. 개인택시 면허 심사 및 양도양수
6. 화물취급소 창고업 인인·면허
7.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업 등록
8. 교통량 조사 및 분석(교통영향 평가)
9. 교통체계관리 및 교통개선사업
10. 교통안전대책(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학교안전지구개선 등)
11. 교통소통 촉진대책(정체지점 개선 사업 등)
12. 버스정류장 설치 인가 및 택시승차대 관리
13. 버스 전용차선 설치
14. 자전거 보관대 설치 및 관리
15. 도로 안내 표지판 설치 및 관리
16. 삭제
17. 삭제
18.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19. 임시운행 허가에 관한 사항
20. 자동차 검사 및 정비 명령

21. 자동차 의무보험에 관한 사항
22. 자가용 사용신고(신규, 변경, 폐지)
23. 자동차 등록번호표 변경 및 재교부
24. 이륜자동차의 신고·관리에 관한 사항
25. 삭제
26.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에 관한 사항
27.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28. 건설기계(중기)등록 및 부담금에 관한 사항

제15조(주차관리과) 주차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차장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주차장 특별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
3. 민영주차장 각종 신고처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주차단속 종합계획 수립
5. 주차단속원 지도 감독
6. 주차단속 이의진술 처리
7. 주차위반 견인 및 장기미반환차량 처리에 관한 사항
8. 견인대상업소 지도감독 및 시설관리공단 징수 업무 협조
9. 무적·사업용차량 법규위반단속 및 처분
10. 택시운전자격 정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11. 정비업체 지도 단속
12. 중고자동차 매매업소 및 자동차 대여사업체 관리 감독
13. 폐차장운영 및 방치차량 처리에 관한 사항
14. 운송알선업체 지도단속 및 유상운송허가
15. 버스전용차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6. 교통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
17. 교통불편신고 민원 사항
18.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19. 운수 과징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20. 공영주차장(거주자 우선주차 포함)의 관리총괄 및 위탁사무에대한 지도·감독
21.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22. 거주자 우선주차제 추진
23. 담장 허물기 사업

제4절 일자리경제국

제16조(일자리경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17조(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 발굴·관리업무 총괄
2.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일자리관련 인센티브 및 공모에 관한 사항
4. 동작직업교육특구에 관한 사항
5. 일자리목표공시제에 관한 사항
6.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
7.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8. 구인·구직상담,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9. 취업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
10. 고용촉진훈련에 관한 사항
11.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12. 어르신 일자리 발굴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3. 동작50+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4.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5.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사항
16.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관한 사항
17. 뉴딜일자리에 관한 사항
18. 직업소개소 등록·변경·점검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19. 청년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20. 청년일자리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1. 일자리카페 운영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8조(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적경제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5. 창업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6. 동작구 상공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소상공인 지원 및 소자본 창업 교육에 관한 사항
8. 공장등록 및 실태조사
9. 전통시장 활성화 업무에 관한 사항
10. 전통시장 인정 및 상인회 등록
11. 전통시장 안전관리
12. 대규모 점포 등록 등에 관한 사항
13. 통신·방문판매 및 전화권유 판매업에 관한 사항
14. 대부업에 관한 사항
15. 담배 소매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물가안정관리 및 가격표시제 관리에 관한 사항
17. 계량기 검사 및 불법계량행위 단속
18. 농업 및 수산업무에 관한 사항
19. 도·농간 교류(직거래장터)에 관한 사항
20. 도시농업에 관한 사항
21. 비료 및 농약
22. 양곡유통 및 관리
23. 농지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4. 복권판매소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제19조(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유일반재산의 관리 및 처분
2. 재산수입에 관한 사항
3. 재산관리관 지정
4. 공유재산 심의회 운영
5. 공유재산의 감정, 측량에 관한 사항
6. 물품관리·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7. 공사도급·물품구매계약 등
8. 계약심사위원회의 운영
9.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10. 부정당업자의 제재에 관한 사항
11. 지출원인행위부 정리
12. 물품관리 및 공사, 물품입회
13. 지출종합계획의 수립·조종 및 자금관리

14. 지출 총괄 및 세입세출의 결산
15. 직원 봉급 및 수당에 관한 사항
16. 원천징수 납부
17. 지출증빙서 관리
18. 수입중지에 관한 사항
19. 지출계산서의 보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0.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
21. 구 금고에 관한 사항
22. 자산 및 부채 관리
23. 회계업무 처리
24. 회계 결산

제20조(징수과) 징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세외수입의 세입총괄 분석·평가
2. 지방세 세입징수보고서 작성
3. 시금고 지도감독 및 수입금의 경정 의뢰
4. 가산금의 조정 및 독촉결의에 관한 사항
5. 소인, 과오납, 환불, 충당, 계좌경정, 감액정리
6. 지방세 징수부 및 영수필통지서 관리
7. 체납지방세 징수에 관한 사항
8. 체납자동차 및 과태료 번호판 영치
9.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10. 체납지방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11. 체납지방세 징수촉탁
12. 체납지방세 징수유예 결정
13. 체납 및 변동자료 전산입력
14. 교부청구 및 배당금 수령
15. 압류재산의 공매 및 환가정산
16. 결손처리
17. 체납업무 전산관리 총괄(현계·체납·전산자료 대사확인)

제21조(재산세과) 재산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및 감면조례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재산세, 등록면허세(등록))
2. 재산세, 등록면허세(등록)의 신고 및 부과·감면에 관한 사항

3. 부동산취득세의 신고 및 부과·감면에 관한 사항
4.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감면에 관한 사항
5. 재산세(도시지역분)의 부과·감면에 관한 사항
6.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계획 수립·시행 및 세무조사 운영에 관한 사항
7. 세원발굴 및 연구(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부동산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
8. 과세대장 등의 정비 및 관리(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부동산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
9. 토지·건축물 과세표준의 정비 및 관리
10.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11. 감면 및 비과세 대상자에 대한 재산조화에 관한 사항
12. 과세전 적부심사 신청처리에 관한 사항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부동산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
13. 지방세 이의신청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부동산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
14. 지방세 심판·소송업무에 관한 사항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부동산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
15.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 지방세 지출예산에 관한 사항
17. 지방세에 관한 조세범칙 사건의 처리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부동산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
18. 유공납세자 선정 및 관리

제22조(지방소득세과) 지방소득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및 감면조례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등록면허세(면허), 등록면허세(차량등록분))
2. 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부과·감면에 관한 사항
3. 주민세의 신고 및 부과·감면에 관한 사항
4. 등록면허세(면허, 차량등록분)의 신고 및 부과·감면에 관한 사항
5.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건설기계 취득세의 신고 및 부과·감면에 관한 사항
6. 과세대장 등의 정비 및 관리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등록면허세(면허, 차량등록분))
7. 세원발굴 및 연구(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등록면허세(면허, 차량등록분))
8. 과세전 적부심사 신청처리에 관한 사항(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등록면허세(면허, 차량등록분))
9. 지방세 이의신청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등록면허

세(면허, 차량등록분)

10. 지방세 심판·소송업무에 관한 사항(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등록면허세(면허, 차량등록분))
11. 지방세에 관한 조세범칙 사건의 처리(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등록면허세(면허, 차량등록분))
12. 세외수입 일반회계 총괄 분석·평가
13. 세외수입 일반회계 징수보고서 작성
14. 세외수입 일반회계 세입예산 수합 편성
15. 세외수입 일반회계 지난년도 체납 징수관리(재무과, 가로행정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업무 및 특별회계 제외)
16. 세외수입 수수료(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조례 제·개정 및 협의
17. 세외수입 연감 작성
18. 세외수입 부서 교육 및 지도 점검

제5절 복지국

제23조(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24조(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주민서비스 욕구조사 및 서비스 제공 계획에 관한 사항
3. 주민서비스 관련 전산망 구축·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4.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5.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재해구호(이재민 실태조사, 구호품 지급 등)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지역자원발굴·동원·연계·관리 및 기관연계 구축업무
9. 사회복지서비스대상자 결정 및 통지
10. 이웃돕기사업, 후원결연에 관한 사항
11. 긴급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12. 종합사회복지관, 푸드뱅크에 관한 사항
13.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항
14. 동작복지재단에 관한 사항

15.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6. 삭 제
17. 삭 제
1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5조(어르신장애인과) 어르신장애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인복지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초연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관한 사항
5. 장사·납골·장례식장 관리에 관한 사항
6. 노인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7. 경로당 등 노인시설 운영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노인복지법인에 관한 사항
9. 노인단체관리에 관한 사항
10. 고령화 대책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1.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12.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및 사당데이케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3. 데이케어센터 등 재가복지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4. 노인돌봄서비스 등 독거노인관리에 관한 사항
15. 동작휴양소 관리에 관한 사항
16. 장애인복지 전반에 관한 사항
17. 장애인 시설, 단체에 관한 사항
18. 장애인편의시설에 관한 사항
19. 장애인복지법인에 관한 사항

제26조(보육여성과) 보육여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정복지 종합계획 수립 시행
2. 영유아보육사업 및 보육시설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시행계획 수립 시행
4. 여성 인력 개발 및 단체지도, 육성
5. 여성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6. 여성 자원봉사 활동 육성, 지원
7. 한부모가정 지원에 관한 업무

8. 여성복지시설 지원 및 성폭력예방에 관한 사항
9.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10.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업무 추진
11. 양성평등기금 조성 및 지원

제27조(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복지시설 및 관련법인, 시설 아동에 관한 사항
2. 취약계층 청소년 및 소년소녀가장 보호
3. 청소년 사회교육 및 청소년 관련법인, 단체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비행, 폭력 예방 및 선도 보호에 관한 사항
5.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발생 예방
6. 일반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관한 사항
7. 드림스타트 설치 및 운영
8. 저출산 관련 업무
9. 결혼중개업 관련된 사항
10. 아동수당 관련 업무
11.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12. 다문화 가정 지원 관련 업무
1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28조(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 보장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3. 차상위계층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자활지원계획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6. 자활후견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7. 기초생활보장기금, 생업자금 융자에 관한 사항
8. 자활장려금에 관한 사항
9. 영구·매입·전세임대 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10.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 융자 지원에 관한 사항
11. 취약계층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12. 노숙자, 부랑인 업무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13. 의사상자 및 무연고사망자 처리에 관한 사항

14. 주거급여 지급 및 관리
15.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급 및 관리
16. 서울형 희망의 집수리 지원
17. 한지붕 세대공감사업 지원
18.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보장결정, 급여통지,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절 도시건설국

제29조(도시건설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주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 도로관리과장, 치수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30조(주택과) 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행정의 종합 및 주택통계
2.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공동주택관리 지도·감독 및 공동주택 안전점검
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및 하자보수불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5. 임대사업자(등록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주택관리업 등록관리
7. 주택관리사(시험 및 자격증)에 관한 사항
8. 30세대 이상의 민영주택건설·재건축 사업계획 승인(변경) 및 분양승인에 관한 사항
9. 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지도감독
10. 민영주택건설 사전결정에 관한 사항
11.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업무에 관한 사항
12. 감리자지정(사업계획 승인) 업무 관련 사항
13. 임대주택 수급 계획 수립
14. 구 자체 임대주택 총괄관리
15. 무허가건물 예방·단속과 정비 및 진정처리
16. 건축철거민 입주분양에 관한 사항
17. 항촉업무
18. 어르신자립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1조(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각종 인·허가(개발제한 구역은 제외) 및 준공 검사(다만, 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3. 도시관리계획 입안(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위임된 사항에 한함)
4.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의 공고
5. 사도 개설 허가
6.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 결정(서울시 사무위임 규칙에 위임된 사항에 한함)
7. 경미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사무위임 규칙에 의거 위임된 사항에 한함)
8. 도시관리계획의 지형도면 고시와 실효 고시
9.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0. 역세권 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11. 범죄예방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2. 범죄예방디자인 및 공공디자인 사업추진 및 관리
13. 공공디자인에 대한 계획수립과 제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4. 디자인협정의 조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15. 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의 구성·운영·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16. 디자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17. 공공디자인의 심의와 자문에 관한 사항
18. 공공디자인의 기획(연구, 개발) 등 공공디자인 행정의 전반적인 사항

제32조(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2. 주택재개발·주거환경개선 지구내 위험건축물 축대·절개지 등 위험시설물 관리
3. 재개발지구내 시유재산 관리
4.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변경·중지·폐지) 인가
5. 주택재개발조합 설립(변경) 인가
6.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
7. 주택재개발사업 준공인가전사용허가 및 준공인가
8. 주택재개발사업 환지 촉탁등기
9. 주택재개발비 환수 및 저당권 해지
10. 뉴타운사업(재건축 제외)에 관한 사항
11. 공공관리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12.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제33조(건축과)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행정의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
2. 건축사 등록 및 조치에 관한 사항
3. 건축관계 법규 정비 및 제도개선
4. 위법 건축물에 관한 사항
5. 건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건축심의에 관한 사항
7. 정화조 설치 및 사용검사 보고
8. 일반건축물의 위험건물 및 시설물 관리
9. 건축허가·신고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10. 건축물 동원에 관한 사항
11.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
12. 건축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3. 구, 동청사, 공공복지시설 및 그 밖에 공용 및 공공용 건물 신·증개축 등
14. 건축사 대행건축물의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5. 공사장 관리·시설 위험시설물 총괄
16.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
17.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제34조(도로관리과) 도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 및 토목공사 계획 수립 및 집행
2. 도로 및 토목공사의 설계, 시공 및 감독
3. 비관리청 도로시설공사의 허가
4. 도로대장 관리
5. 도로(뒷골목 포함) 및 보도시설물 유지관리
6. 도로시설물 성능개선공사 설계, 시공 및 감독
7. 제설작업의 계획 수립 및 실시
8.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복구비의 부과징수
9. 지하도, 지하과장, 터널 및 그 부속시설물의 유지관리
10. 지하도, 터널의 청소 등 환경정비
11. 도로시설물(지하도, 육교, 옹벽 등) 안전점검 업무
12. 도로시설물 대장 관리
13. 가로등, 보안등 시설의 공사계획 수립 시행

14. 가로등, 보안등 시설동사의 설계시공 및 감독
15.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지도감독
16. 지하보차도, 터널, 공동구의 기전시설 유지관리
17. 도로조명시설대장 관리

제35조(치수과) 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수심사분석 시설계획 및 예산업무
2. 하수도 설치인가 및 사용개시업무
3. 수방대책 및 하천유지관리
4. 시설공사설계 및 감독관리
5. 하수도 관리업무(통계, 대장, 하수관망도 등)
6. 하수시설물 안전점검, 하자점검
7. 유수장애시설물, 하수도 계측장비관리, 배수관련 설비업무
8. 비관리청 하수도 관련 협의
9. 기동반 보수자재, 환경순찰, 견문, 전화민원 관련 업무
10. 하수도 사용료 징수관련 신고, 허가 및 출수량 사정업무
11. 하수도 사업비 세입금의 징수계획 및 통계
12. 하수도 사용조례 위반자 조치 및 다량 사용자 관리
13. 하수도 사용료 경정 및 체납관리
14. 빗물펌프장 및 수문관리
15. 지하수 관리(개발, 이용, 허가 등)
16. 지하수 수질검사, 계측기관리 및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
17.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의 시정, 폐쇄, 원상복구 명령
18. 지하수법 및 조례 위반자 조치
19. 지하수 개발 이용, 시공업 등록 및 영향조사기관의 지정

제7절 행정국

제36조(행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행정지원과장, 자치행정과장, 체육문화과장, 교육행정과장, 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부동산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37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당직 및 청사방호에 관한 사항
2. 행정차량 관리
3. 청사건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

4. 예비군 구청소대 및 자치 민방위대의 운영
5. 방위협의회 운영 및 지도
6. 구청장 의전에 관한 사항
7. 국경일, 기념일 등 행사에 관한 사항
8. 의회·국제교류사업에 관한 사항
9. 공무원의 승진·전보·인사교류 등 임용 전반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12. 인사위원회 운영 및 공무원 징계심의·상훈에 관한 사항
13. 인사기록 및 인사전산관리, 인사행정정보공개시스템 관리 운영
14. 공무원 신분관계 제증명 및 비밀취급인가
15. 공무원 교육훈련·상시학습·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16.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17. 조직정보공개시스템 관리 운영
18. 직원 후생복지증진 및 복무관리
19. 공무원의 보수·연금·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20. 공무원 대부관리 및 임대아파트 입주에 관한 사항
21. 공무원 국·내외 연수에 관한 사항
22. 공무원국외여행심사에 관한 사항
23. 직원 상조회 운영에 관한 사항
24. 공무원노동조합 등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25. 조직일체감 훈련 등 직원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26. 직원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27. 직원 체력단련실 및 솔향기 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8. 문화복지센터 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9. 구민회관 관리 총괄 및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3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8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의 지도감독
2. 구·동의 행정구역·통반조직 및 운영
3.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주민투표에 관한사항
4. 취학 그 밖에 학무

5. 행정사 신고관리
6. 주민등록 및 인감
7. 구민상 및 모범유공구민 표창
8. 반상회 운영
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련 업무
10. 동 행정관련 문서 및 회의통제
11. 자치회관 운영지도 및 주민자치위원회, 자원봉사자 운영 및 관리
12. 사회단체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용자지원에 관한 사항
14. 새마을금고 운영지도
15. 문화시민운동 계획 수립 및 추진
16. 사회단체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7. 총무실시계획 수립 및 총괄
18. 정부연습 등 비상대비 업무
19. 민방위 기본운영계획 수립
20. 민방위대 조직편성 및 운영관리
21. 화생방 방호계획 수립 및 시행
22. 민방위대원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23. 인력동원 자원조사, 관리 및 동원훈련 실시
24. 민방위 대피시설 확보 및 관리
25. 사회근무요원 종합관리
26. 삭제
27. 자원봉사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
28.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9. 방범용 CCTV 관련 업무
30. 마을안전봉사단 운영
31.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환추진
32.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사항
33. 공유촉진사업에 관한 사항

제39조(체육문화과) 체육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체육 진흥·지원 및 협조
2. 체육교실 및 레저교실 등 운영

3. 체육의 날 등 체육행사 주관
4. 체육관계 비영리 법인의 지도 감독
5. 체육시설업의 허가·신고·등록 및 지도·감독
6. 구립체육시설 관리 총괄 및 위탁사무에대한 지도·감독
7. 구립체육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체육 진흥 관련 업무
9. 공공 체육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및 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10. 구 직영 및 위탁 생활체육교실 운영
11. 직장 운동 경기부(동작구 씨름단) 운영
12. 향토문화의 보급연구 및 문화예술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13. 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14. 종무행정에 관한 사항
15. 출판사·인쇄소 등록 및 지도·감독
16. 문화재 보수·유지 및 재산관리
17. 문화재 매매업소 허가 및 지도감독
18. 지방문화재, 전통문화 발굴 및 조사보급
19. 음반, 비디오물, 노래연습장, 게임물, 영화업 등에 관한 사항
20. 정기간행물 등록 관리
21. 문화재활용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관한사항
22. 여가·레저 활동 지원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3. 문화시설 확충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24. 전통사찰 보존관리

제40조(교육정책과) 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지원종합계획 수립·시행
2.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3.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
4. 초등학교주변 CCTV 설치 및 관리
5. 우수학교 유치
6. 혁신교육지구사업 공모 및 추진
7. 영어교육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8.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9.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10. 평생학습기본계획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지원·운영에 관한 사항
11. 평생학습현황조사, 수요조사 및 통계
12. 초·중·고 학교의 평생교육 지원·연계
13. 평생학습관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14. 도서관 건립 및 위탁운영·관리
15. 통합도서관시스템 및 상호대차서비스 운영관리
16. 독서문화 진흥사업에 관한사항
17. 학교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
18. 공·사립 작은도서관 등록 및 관리
19. 동 마을문고 운영 및 관리

제41조(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물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2.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구·동 민원업무 행정지도
4. 민원안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현장 민원실 운영
6. 문서수발 및 우편물 처리
7. 유기한 민원 접수 처리
8. 건축민원 등 접수처리(즉시 민원)
9. 외국인 등록
10. 모사전송 민원접수 처리
11. 민원 후견인제 및 민원1회 1방문에 관한 사항
12.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발급
13. 제적부 관리
14. 가족관계등록 기록 및 교합
15. 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 처리
16. 인구동태
17. 신원조회
18.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19.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
20. G4C(대한민국 전자정부)에 관한 사항
21. 인감증명 발급

22. 수렵면허 신고 처리
23. 여권업무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24. 여권관련 국비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25. 여권 전산망 및 전산장비 관리
26. 여권발급 신청접수
27. 여권발급 심사
28. 여권관련 제신고 접수처리
29. 여권 발급 및 교부
30. 다산콜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제42조(부동산정보과) 부동산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신고 및 허가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운영
3. 건축물대장관리 및 제증명 발급
4. 토지거래허가(신고)제 운영
5. 계약서 검인 업무
6. 중개업소 허가 및 관리
7. 지적제도 운영 및 토지정책 업무
8. 소유권확인 소송에 관한 사항
9. 대항법인 지도 감독
10. 토지기록 전산업무(통계, 논리오류 등)
11. 측량성과 검사
12. 등기필 및 소유권변경 정리
13. 토지이동 처리(공유토지 포함)
14.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
15.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관리
16. 축척변경 및 불부합지 정리
17.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81조(지목변경 신청)에 의한 사업신고에 따른 조치
18. 지적공부 관리 및 제증명 발급
19. 도시계획도 관리 및 제증명 발급
20. 지가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1. 개발이익환수제 운용
22. 지리정보시스템(GIS)에 관한 사항
23. 도로명주소 부여 업무 추진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

제43조(소장)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44조(하부조직) ① 보건기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지방약무사무관 또는 지방의무사무관으로, 보건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강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무사무관으로 하고, 보건의약과장은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② 보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보건 기획 및 평가
2. 보건통제 및 보건의료정보의 관리
3. 문서·보안·관인관수·인사·복무에 관한 사항
4. 예산회계·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5. 민원실 운영
6. 건강진단서 필증 및 제증명발급
7. 진료비 및 의료수가 조정 및 징수
8. 건강도시사업에 관한 사항
9.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중 급성 및 만성 감염병에 관한 사항
10. 급성전염병 역학조사 등에 관한 사항
11.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시행에 관한 사항
12. 방역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3. 방역약품 및 방역장비관리에 관한 사항
14. 소독업 신고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
15. 보건분소 운영
16. 그 밖의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7. 삭제
18. 금연사업에 관한 사항
19. 삭제
20. 절주, 비만 등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사항
21. 지역사회건강조사에 관한 사항
22. 건강생태계 구성에 관한 사항
23. 구민 영양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③ 보건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위생업소 허가(신고)
2. 식품위생업소의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3. 집단급식소 신고 및 지도단속
4. 모범업소 지정 및 취소
5. 식중독에 관한 사항
6. 공중위생업소 허가 및 신고
7.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사후관리
8. 식품제조업, 판매업의 허가 및 신고
9. 식품제조업, 판매업의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10. 부정, 불량식품 단속
11. 이용사, 미용사의 지도감독
12. 영업시간 위반, 퇴폐.변태 등 감시단속
13. 위생법규위반 행정처분업소 사후관리
14. 무허가업소 정비 및 관리
15.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 및 이전폐쇄 관리
16. 식품진흥기금 용자관리
17.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8. 원산지표시 단속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9. 농·축·수산물 원산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20. 명예감시원 활용제도·홍보
21. 축산·동물 업무에 관한 사항
- ④ 건강관리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2. 어르신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3.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4.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예방접종사업에 관한 사항
 7. 산후조리원 관리에 관한 사항
 8.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9. 아토피·천식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10.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1.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중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허가 및 신고,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2. 임산부·영유아 의료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
13. 취약계층 영양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1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15. 치매예방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16. 재가암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17. 자살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18.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⑤ 보건의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료법」시행에 관한 사항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에 관한 사항
 3.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에 관한 사항
 4. 「혈액관리법」시행에 관한 사항
 5.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 안마사에 관한 사항
 6. 의료 동원에 관한 사항
 7. 의약품 동원에 관한 사항
 8. 「약사법」시행에 관한 사항
 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에 관한 사항
 10.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1. 조제실 및 의약품 수급에 관한 사항
 12. 삭제
 13. 1차진료, 물리치료, 구강보건사업 및 한방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14. 임상병리검사, 방사선 업무에 관한 사항
 15. 방사선·병리검사의 장비, 시약 등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16. 삭제
 17. 건강검진 사업에 관한 사항
 18.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19. 대사증후군 사업 및 심뇌혈관질환 등 관리에 관한 사항
 20.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21.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22. 삭제

- 23. 삭제
- 24. 삭제
- 25. 건강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26. 암환자 관리사업 중 암 조기검진사업
- 27.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관한 사항

제4장 하부행정기관

제1절 동

제45조(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한다.

제46조(분장사무) 동주민센터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인사·복무관리 및 보안·비밀문서에 관한 사항
- 2. 직인관리, 문서통제 및 각종 지시사항에 관한 사항
- 3. 통·반의 구역조정 및 통·반장 위·해촉
- 4. 청사관리 및 사무비품에 관한 사항
- 5. 회계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 6. 동민 여론조사 및 각종 동향보고에 관한 사항
- 7. 국민운동단체 조직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8. 복지대상자 급여지원 신청, 변경사항 등에 관한 상담 및 접수
- 9.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아동·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
- 10. 지역주민 복지조직화, 복지자원 발굴
- 11. 각종 복지대상자에 대한 심층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
- 12. 동 체육회 관리에 관한 사항
- 13. 민방위대 운영에 관한 사항
- 14.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 15. 주민등록 전산에 관한 업무
- 16. 취학아동에 관한 사항
- 17. 제증명 및 증명의 경유에 관한 사항
- 18.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주소지 변경에 관한 사항
- 19. 청소업무에 관한 사항
- 20. 그 밖의 주민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재난수습 주관부서 중 시장 및 대규모 점포 수습주무부서를 “생활경제과”에서 “경제진흥과”로, 사이버 안전관리 수습주무부서를 “홍보전산과”에서 “미래도시과”로, 대형광고물 수습주무부서를 “도시계획과”에서 “가로행정과”로, 정보통신 마비 수습주무부서를 “홍보전산과”에서 “미래도시과”로, 유통마비(농수산물, 생활필수품) 수습주무부서를 “생활경제과”에서 “경제진흥과”로, 산업시설 생산마비 수습주무부서를 “생활경제과”에서 “경제진흥과”로, 어린이안전 수습주무부서를 “보육여성과”에서 “아동청소년과”로, 노인안전 수습주무부서를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어르신장애인과”로, 청소년수련시설 안전관리 수습주무부서를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아동청소년과”로, 노인복지시설 안전관리 수습주무부서를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어르신장애인과”로, 장례식장 안전관리 수습주무부서를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어르신장애인과”로 한다.

별표4 중 1.호우·대설·태풍 시 편성기준 가.비상단계 실무반 2)협업기능반 가)긴급생활 안정지원반 중 “어르신청소년과”를 “어르신장애인과”로 하고, 다)긴급통신 지원반 “홍보전산과”를 “미래도시과”로, 라)시설피해 응급복구반 “일자리경제담당관”을 “경제진흥과”로, 바)재난수습 홍보반 “홍보전산과”를 “홍보과”로, 차)행정지원 및 자원봉사 관리반 “기획예산과”를 “기획조정과”로, 나.비상1단계 실무반 2)협업기능반 가)긴급생활 안정지원반 중 “어르신청소년과”를 “어르신장애인과”로 하고, 다)긴급통신 지원반 “홍보전산과”를 “미래도시과”로, 라)시설피해 응급복구반 “생활경제과”를 “경제진흥과”로, 바)재난수습 홍보반 “홍보전산과”를 “홍보과”로, 차)행정지원 및 자원봉사 관리반 “기획예산과”를 “기획조정과”로 하며, 다.비상2단계 실무반 2)협업기능반 가)긴급생활 안정지원반 중 “어르신청소년과”를 “어르신장애인과”로 하고, 다)긴급통신 지원반 “홍보전산과”를 “미래도시과”로, 라)시설피해 응급복구반 “생활경제과”를 “경제진흥과”로, 바)재난수습 홍보반 “홍보전산과”를 “홍보과”로, 차)행정지원 및 자원봉사 관리반 “기획예산과”를 “기획조정과”로 하며, 2.지진(해일)·화산 시 편성기준 가.비상단계 실무반 2)협업기능반 가)긴급생활 안정지원반 중 “어르신청소년과”를 “어르신장애인과”로 하고, 다)긴급통신 지원반 “홍보전산과”를 “미래도시과”로, 라)시설피해 응급복구반 “생활경제과”를 “경제진흥과”로, 바)재난수습 홍보반 “홍보전산과”를 “홍보과”로, 차)자원봉사 자원 및 관리반 “기획예산과”를 “기획조정과”로 하며, 나.비상1단계 실무반 2)협업기능반 가)긴급생활 안정지원반 중 “어르신청소년과”를 “어르신장애인과”로 하고, 다)긴급통신 지원반 “홍보전산과”를 “미래도시과”로, 라)시설피해 응급복구반 “생활경제과”를 “경제진흥과”로, 바)재난수습 홍보반 “홍보전산과”를 “홍보과”로, 차)행정지원 및 자원봉사 관리반 “기획예산과”를 “기획조정과”로 하며, 다.비상2단계

실무반 2)협업기능반 가)긴급생활 안정지원반 중 “어르신청소년과”를 “어르신장애인과”로 하고, 다)긴급통신 지원반 “홍보전산과”를 “미래도시과”로, 라)시설피해 응급복구반 “생활경제과”를 “경제진흥과”로, 바)재난수습 홍보반 “홍보전산과”를 “홍보과”로, 차)행정지원 및 자원봉사 관리반 “기획예산과”를 “기획조정과”로 한다.

별표5 사회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 1.편성기준 실무반 2)협업기능반 가)긴급생활 안정지원반 중 “어르신청소년과”를 “어르신장애인과”로 하고, 다)긴급통신 지원반 “홍보전산과”를 “미래도시과”로, 라)시설피해 응급복구반 “생활경제과”를 “경제진흥과”로, 바)재난수습 홍보반 “홍보전산과”를 “홍보과”로, 차)행정지원 및 자원봉사 관리반 “기획예산과”를 “기획조정과”로 한다.

- ②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조정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 ④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안업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획재정국장·복지환경국장·도시관리국장·건설교통국장 및 보건소장”을 “기획조정국장·생활환경국장·일자리경제국장·복지국장·도시건설국장·행정국장 및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홍보전산과장”을 “미래도시과장”으로 한다.
- ⑤ 「서울특별시동작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주민생활복지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 ⑥ 「서울특별시동작구청원경찰징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조정국장”으로 한다.
- ⑦ 「서울특별시동작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홍보전산과장”을 “홍보과장”으로 한다.
- ⑧ 「서울특별시 동작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홍보전산과”를 “홍보과”로 한다.
- ⑨ 「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홍보전산과장”을 “미래도시과장”으로, 제4조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조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홍보전산과장”을 “미래도시과장”으로 한다.
- ⑩ 「서울특별시동작구보 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홍보전산과장”을 “홍보과장”으로, 제7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제8조 중 “홍보전산과장”을 “홍보과장”으로 한다.
- ⑪ 「서울특별시 동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제5조,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3항, 제19조제3항 및 제4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제3항제1호 및

- 제2호, 제4항,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조 제4호,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 제31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제25조제2항 “홍보전산과장”을 “홍보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4. 자치법규안의 작성 서식 가. 표지 중 “기획예산과장 심사필”을 “기획조정과장 심사필”로 한다.
- ⑫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국·소·단장, 과·동장(담당관·임시기구의 장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국·소장, 과·동장(담당관의 장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제8조제1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조정국장”으로 한다. 별표 1 내부위임사항 중 “일자리경제담당관”을 “일자리경제국”으로, “복지환경국”을 “복지국”으로, “기획재정국”을 “행정국”으로 한다.
- ⑬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제6조, 제7조,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제3호, 제13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제26조제4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및 제3항, 제37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제26조제4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조정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송무용전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 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조정국장”으로, “행정국장·복지환경국장·도시관리국장·건설교통국장”을 “생활환경국장·일자리경제국장·복지국장·도시건설국장·행정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행정관리국”을 “행정국”으로 한다.
- ⑮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기획팀장”을 “기획조정팀장”으로 한다.
- ⑯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 ⑰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 ⑱ 「서울특별시 동작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 ⑲ 「서울특별시동작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 ⑳ 「서울특별시 동작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로 한다.

- ㉑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기관(부서)별 물품관리 책임자 중 물품관리총괄관(보조총괄관) “기획재정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 ㉒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마목, 사목, 자목, 카목 중 “기획재정국장”을 각각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제7조 중 “기획재정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제8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기획재정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기획재정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6조, 제17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제18조 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을 각각 “기획조정과장”,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제22조제3항,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제70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조정국장”으로,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 ㉓ 「서울특별시동작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 ㉔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생활경제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한다.
- ㉕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어르신청소년과장”을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한다.
- ㉖ 「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생활환경국장”으로 한다.
- ㉗ 「서울특별시동작구 불법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생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건설교통국”을 “생활환경국”으로 한다.
- ㉘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9 - 115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동 작 구 청 장

1. 제안이유

우리구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기능재편을 위해 1국 신설을 포함한 조직개편을 추진함에 따라, 이에 따른 필요인력과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업무수행을 위한 소요인력을 적기에 배치하고자 동작구 총 정원을 1,322명에서 1,334명으로 12명 증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증원(안 제2조)

○ 안 제2조 : 정원의 총수 1,334명 (1,322 → 1,334명, 증 12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1,307명 (1,295 → 1,307명, 증 12명)

※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정규기구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한시정원 (5명)은 본 개정조례안 시행으로 정규정원으로 조정(기존 총 정원에 기 포함)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안 제4조 별표3)

○ 총 계 1,334명 (1,322 → 1,334명, 증 12명)

○ 일반직 계 1,329(1)명 (1,317(1) → 1,329(1)명, 증 12명)

5급 계 63(1)명 (61(1) → 63(1)명, 증 2명)

6급이하 계 1,255명 (1,245 → 1,255명, 증 10명)

※ ()는 행정별정 복수직렬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

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전화: 820-1213, FAX: 820-1188, E-mail: estragon@dongjak.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가.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증원(안 제2조)

○ 안 제2조 : 정원의 총수 1,334명 (1,322 → 1,334명, 증 12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1,307명 (1,295 → 1,307명, 증 12명)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안 제4조 별표3)

○ 총 계 1,334명 (1,322 → 1,334명, 증 12명)

○ 일반직 계 1,329(1)명 (1,317(1) → 1,329(1)명, 증 12명)

5급 계 63(1)명 (61(1) → 63(1)명, 증 2명)

6급이하 계 1,255명 (1,245 → 1,255명, 증 10명)

※ ()는 행정·별정 복수직렬임.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추계기간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으로 함,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지속적으로 존재함.

나. 향후 5년간 인건비 상승률(연 2.8%)을 감안하여 추계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세출 인건비		715,322	735,351	755,941	777,107	798,866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구 비		715,322	735,351	755,941	777,107	798,866

5. 덧붙이는 의견 : 없음

6. 작성자 : 행정지원과장 인산, 인사팀장 양혜영 (02-820-1100, 1212)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추계 대상 및 방법

가. 대 상

개정안의 규정 중 비용추계 대상은 안 제2조 및 제4조 별표3을 근거로 총원되는 인력의 인건비에 대한 사항임.

나. 방 법

○ 일반직 정원에서 5급 2명, 6급 2명, 7급 3명, 8급 2명, 9급 3명 증원

- 5급 : 1인당 연간 인건비 88,674천원×2명으로 177,347천원을 산출
- 6급 : 1인당 연간 인건비 77,253천원×2명으로 154,506천원을 산출
- 7급 : 1인당 연간 인건비 61,378천원×3명으로 184,137천원을 산출
- 8급 : 1인당 연간 인건비 42,897천원×2명으로 85,794천원을 산출
- 9급 : 1인당 연간 인건비 37,845천원×3명으로 113,538천원을 산출

○ 2021년부터는 20년도 인건비 인상률 2.8%선을 반영하였고 산출근거는 아래 표와 같음.

<표> 인건비 산출 내역

연도	증원인원	산 출 내 역	소요예산
계			3,782,588
2020년	12명		715,322
2021년		715,322 천원 × 102.8%	735,351
2022년		735,351 천원 × 102.8%	755,941
2023년		755,941 천원 × 102.8%	777,107
2024년		777,107 천원 × 102.8%	798,866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2019-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1,322명”을 “1,33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295명”을
 “1,307명”으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334	1,334			
정 무 직	1	1			
일 반 직 계	1,329(1)	1,329(1)			
3급	1	1	-	-	-
4급	8	6	1	1	-
5급	63(1)	36(1)	2	10	15
6급 이하 계	1,255	1,255			
전문경력관 소계	2	2			
별 정 직 계	4	4			
6급상당 이하계	4	4			

※ ()는 행정·별정 복수직렬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322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295명 2. (생략)		제2조(정원의 총수) ----- ----- 1,334명 ----- ----- 1. ----- 1,307명 2. (현행과 같음)		
제4조(직급별 정원) (생략) [별표 3] 정원별·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명)		제4조(직급별 정원) (현행과 같음) [별표 3] 정원별·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명)		
구분	총계	구분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등
총계	1,322	1,322		
정무직	1	1		
일반직계	1,317(1)	1,317(1)		
3급	1	1	-	-
4급	8	6	1	1
5급	61(1)	34(1)	2	10
6급이하계	1,245	1,245		
전문경력관 소계	2	2		
별정직계	4	4		
6급상당이하계	4	4		
※ ()는 행정·별정 복수직렬임				
구분	총계	구분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등
총계	1,334	1,334		
정무직	1	1		
일반직계	1,329(1)	1,329(1)		
3급	1	1	-	-
4급	8	6	1	1
5급	63(1)	36(1)	2	10
6급이하계	1,255	1,255		
전문경력관 소계	2	2		
별정직계	4	4		
6급상당이하계	4	4		
※ ()는 행정·별정 복수직렬임.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9 - 115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동 작 구 청 장

1. 제안이유

우리구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기능재편을 위해 1국 신설을 포함한 조직개편을 추진함에 따라 총 정원을 1,322명에서 1,334명으로 12명 증원하고, 사회복지직 승진적체 해소 및 일부 기능쇠퇴 분야 정원 상계를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조정(안 제2조 별표 관련)

- 총 계 : 1,334명, 12명 증 (구본청 842→854명)
- 일반직계 : 1,329명, 12명 증 (구본청 838→850명)
- 5급 소계 : 61 → 63명, 2명 증 (구본청 34→36명)
 - 행 정 : 39 → 40명, 1명 증(구본청 22→23명)
 - 행정 또는 사회복지 : 3 → 4명, 1명 증(구본청 2→3명)
- 6급 소계 : 262 → 265, 3명 증 (구본청 190→193명)
 - 행 정 : 167 → 168명, 1명 증(구본청 119→120명)
 - 세 무 : 15 → 16명, 1명 증(구본청 15→16명)
 - 사회복지 : 10 → 11명, 1명 증(구본청 4→5명)
- 7급 소계 : 406 → 410명, 4명 증 (구본청 276→278명, 동 83→85명)
 - 사회복지 : 32 → 34명, 2명 증(동 15→17명)
 - 방 호 : 2 → 1명, 1명 감(구본청 2→1명)
 - 식품위생 : 1 → 0명, 1명 감(구본청 1→0명)
 - 시 설 : 32 → 35명, 3명 증(구본청 32→35명)
 - 방송통신 : 2 → 3명, 1명 증(구본청 2→3명)

- 8급 소계 : 363 → 371명, 8명 증 (구본청 218→219명, 동 99→106명)
 - 사회복지 : 53→62명, 9명 증(구본청 17→19명, 동 36→43명)
 - 기계운영 : 1→0명, 1명 감(구본청 1→0명)
- 9급 소계 : 214 → 209명, 5명 감 (구본청 111→115명, 동 91→82명)
 - 행 정 : 76 → 77명, 1명 증(구본청 39→40명)
 - 세 무 : 3→4명, 1명 증(구본청 3→4명)
 - 사회복지 : 61→51명, 10명 감(구본청 5→4명, 동 56→47명)
 - 방송통신 : 1→2명, 1명 증(구본청 1→2명)
 - 시설관리 : 1 → 3명, 2명 증(구본청 1→3명)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820-1213, FAX: 820-1188, E-mail: estragon@dongjak.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계	구본청	구의회 사무국	직속기관	동
총 계		<u>1,334</u>	<u>854</u>	27	116	337
정 무 직 계		1	1			
구 청 장		1	1			
일 반 직 계		<u>1,329</u>	<u>850</u>	26	116	337
3 급 소 계		1	1			
부 이 사 관		1	1			
4 급 소 계		8	6	1	1	
서 기 관		4	3	1		
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		2	2			
기 술 서 기 관		2	1		1	
5 급 소 계		<u>63</u>	<u>36</u>	2	10	15
행 정		<u>40</u>	<u>23</u>	2	1	14
의 무		6			6	
시 설		4	4			
행정또는사회복지		<u>4</u>	<u>3</u>			1
행 정 또 는 녹 지		1	1			
행정,보건,간호 또는 의무		2			2	
행 정 또 는 시 설		4	4			
행 정 또 는 별 정		1	1			
의 무 또 는 약 무		1			1	
6 급 소 계		<u>265</u>	<u>193</u>	5	18	49
행 정		<u>168</u>	<u>120</u>	5	4	39
세 무		<u>16</u>	<u>16</u>			
사 회 복 지		<u>11</u>	<u>5</u>			6
공 업		7	7			
녹 지		2	2			
의 료 기 술		1			1	
약 무		2			2	
간 호		3			3	
보 건 진 료		2			2	
시 설		19	19			
방 송 통 신		1	1			
운 전		6	3			3
행 정 또 는 세 무		2	2			
행 정 또 는 전 산		1	1			
행정또는사회복지		3	2			1
행 정 또 는 공 업		2	2			
행 정 또 는 녹 지		2	2			

직급별	기관별	총계	구분청	구의회 사무국	직속기관	동
행정 또는 보건		3			3	
행정, 환경, 보건 또는 공업		1	1			
행정 또는 시설		7	7			
보건, 공업 또는 환경		1	1			
보건 또는 의료 기술		1			1	
간호 또는 보건		2			2	
전기 운영		1	1			
기계 운영		1	1			
7 급 소 계		410	278	10	37	85
행정		236	155	5	9	67
세무		28	28			
전산		2	2			
사회 복지		34	17			17
속기		4		4		
방호		1	1			
공업		12	12			
녹지		3	3			
수의		1			1	
보건		6			6	
식품 위생						
의료 기술		3			3	
약무		2			2	
간호		14			14	
환경		3	3			
시설		35	35			
방송 통신		3	3			
시설 관리		3	2			1
운전		8	6	1	1	
행정 또는 전산		1	1			
녹지 또는 시설		1	1			
보건 또는 간호		1			1	
시설 또는 방재 안전		2	2			
전기 운영		4	4			
기계 운영		3	3			
8 급 소 계		371	219	4	42	106
행정		151	99	2	3	47
세무		24	24			
전산		3	2		1	
사회 복지		62	19			43
공업		10	10			

직급별	기관별	총계	구분청	구의회 사무국	직속기관	동
녹	지	4	4			
보	건	9	2		7	
식품위생	의료기	1			1	
의료기	술	5			5	
간	호	20			20	
환	경	1	1			
시	설	26	26			
방송통	시	2	2			
시	설관	4	3		1	
운	전	17	2	1	3	11
행정또는전산		1	1			
행정또는사회복지		6	4			2
행정또는시설		4	4			
녹지또는시설		2	2			
시설또는공업		1	1			
시설또는방재안전		4	4			
사무운영	영	12	8		1	3
전기운영	영	2	1	1		
기계운영	영					
9급소계		209	115	4	8	82
행정	정	77	40	4	2	31
세	무	4	4			
전	산	1	1			
사회복지		51	4			47
공업		6	6			
녹지		3	3			
보건		2			2	
의료기	술	3			3	
환	경	1	1			
시	설	21	21			
방송통	시	2	2			
시	설관	3	3			
운	전	25	23		1	1
행정또는전산		2	2			
행정또는사회복지		7	4			3
시설또는방재안전		1	1			
전문경력관소계		2	2			
나군(화생방)		2	2			
별정직계		4	3	1		
6급상당소계		1	1			

직급별 \ 기관별	총계	구분청	구의회 사무국	직속기관	동
일반비서	1	1			
7급상당소계	3	2	1		
수행비서	3	2	1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직급·직렬별정원) [별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제2조(직급·직렬별정원) [별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기관별 \ 직급별	총계	구분청	구의회 사무국	직속기관	동	기관별 \ 직급별	총계	구분청	구의회 사무국	직속기관	동
총계	1,322	842	27	116	337	총계	1,334	854	27	116	337
정무직계	(현행과 같음)					정무직계	(현행과 같음)				
일반직계	1,317	838	26	116	337	일반직계	1,329	850	26	116	337
3급소계	(현행과 같음)					3급소계	(현행과 같음)				
4급소계	(현행과 같음)					4급소계	(현행과 같음)				
5급소계	61	34	2	10	15	5급소계	63	36	2	10	15
행정	39	22	2	1	14	행정	40	23	2	1	14
행정 또는 사회복지	3	2			1	행정 또는 사회복지	4	3			1
6급	262	190	5	18	49	6급	265	193	5	18	49
행정	167	119	5	4	39	행정	168	120	5	4	39
세무	15	15				세무	16	16			
사회복지	10	4			6	사회복지	11	5			6
7급	406	276	10	37	83	7급	410	278	10	37	85
사회복지	32	17			15	사회복지	34	17			17
방호	2	2				방호	1	1			
식품위생	1	1				식품위생					
시설	32	32				시설	35	35			
방송통신	2	2				방송통신	3	3			
8급	363	218	4	42	99	8급	371	219	4	42	106
사회복지	53	17			36	사회복지	62	19			43
기계운영	1	1				기계운영					
9급	214	111	4	8	91	9급	209	115	4	8	82
행정	76	39	4	2	31	행정	77	40	4	2	31
세무	3	3				세무	4	4			
사회복지	61	5			56	사회복지	51	4			47
방송통신	1	1				방송통신	2	2			
시설관리	1	1				시설관리	3	3			
전문경력관소계	(현행과 같음)					전문경력관소계	(현행과 같음)				
별정직계	(현행과 같음)					별정직계	(현행과 같음)				

동
작
구
보

제
1
6
2
4
호

동
작
구



www.dongjak.go.kr

 동 직 구